

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-38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2. 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○ 1990. 6. 29 조례 제590호로 제정된 조례로서, 이 조례에서 정한 지방직영기업의 범위(적용대상 사업의 기준)가 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고

○ 1999. 3. 1 전문개정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기 전, 6개월 이내에 법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동두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